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2일, 박해철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8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해철의원)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으로, 현행법은 지질공원으로의 인증 절차와 인증취소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지질공원으로의 인증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대해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가치를 지닌 지역,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지질공원 인증’에 대하여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고,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적 일관성 도모에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상 ‘지정’은 주로 ①허가·인가·특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②행정업무를 대행·위탁하는 등 행정업무 부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③지원·육성대상 선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등에 사용되고 있고,

‘인증’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

하며, 그 목적·성격에 따라 ①규제를 위한 인증, ②진흥을 위한 인증, ③ 규제·진흥을 위한 복합적 목적의 인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인증에 관한 규정 중 다수는 인증을 통하여 특정 분야 또는 정책을 지원·육성하려는 취지의 진흥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지원·육성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음.

‘지질공원 인증’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지원·육성대상으로의 선정을 위한 것으로, 그 용례상 지원·육성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네스코와 해외 지질공원 및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도 “지정”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